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The World Comes to Jeju, and Jeju Goes to the World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목 차

## 경제·교통 분야

1.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으로 고시 .....5
2.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상시 지정제 운영 .....6
3.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7
4.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무시간 단축 .....8
5. 멋,맛,즐거움이 있는 최남단 모슬포 토요일시장 개장 .....9
6. 장애인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10
7.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11

## 주민생활 분야

1.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일부사항 증명제도 시행 .....12
2.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3
3.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14
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15
5. CCTV 통합관제센터 본격 운영 .....16
6. 대규모 전기사용자 전기사용 제한 .....17
7. 기본요금 산정기준 및 초과사용부가금 부과방법 변경 .....18
8.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 시행 .....19
9.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시행 .....20

## 보건·복지 분야

1. 2012년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 완화	21
2.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용자제도 개선	22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주말 확대	23
4. 100세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24
5.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25
6.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26
7.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27
8.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28
9. 정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	29
10. 지역아동센터 토요 돌봄 프로그램 운영	30
11. 시설미이용양육수당을 장애아동에게 확대 지원	31
12. 요보호 아동 보호 지원 강화	32
13.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지정·운영	33
14. 응급심야약국 시범 운영	34
15.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35
16.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36
17. 저소득층 의치보철사업 확대	37
18. 12세 이하 아동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실시	38
19. 취학아동 입학시 예방접종 확인 증명서 제출 불필요	39
20. 한부모가족에게 중고생학용품비·생계비·추가양육비 지원	40
21. 0~2세, 5세 무상보육 및 “5세아 누리과정” 공통보육 실시	41
22.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42
23.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조손가정 학생 용돈 지원	43
24. 조손가족에 대한 교육·문화·정서 등 통합 지원	44

## 세정·예산 분야

1.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45
2. 균형발전을 위한 이전기업 지역별 차등 조세지원 .....46
3. 수출기업·신성장제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47
4.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48
5.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49
6.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50
7.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세제지원 .....51
8. “새터민” 자활을 위한 세제지원 .....51
9. 다자녀가정·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52
10.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감면 .....52
11.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53

## 농·수·축산 분야

1. 농업생산비 감축을 위한 농자재 세제지원 확대 .....54
2. 신규 농약판매업 관리인 교육과정 폐지 .....55
3.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신규 도입 .....56
4. 선박위치발신장치 전 어선 설치 확대 .....57
5. 낚시어선 및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제도개선 .....58
6.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체계 변화 .....59

## 소방·경찰 분야


1.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60
2. 노유자시설(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 강화 .....61
3. 도 소속 자치경찰단 통합 .....62

## 병역제도 분야

1.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63
2.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 .....64
3.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65
4.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66
5. “재징병검사” 제도 시행 .....67
6.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68
7.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 .....69
8.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연령 상향 조정 .....70
9.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 마련 .....71
10. 승선근무예비역 이동 근무제도 개선 .....72
11.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73

##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으로 고시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 담당 (☎ 710-2541)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이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최저임금을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에 비하여 260원이 증가한 시급 4,58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은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누구나 적용됩니다.


### ■ 최저임금 판단 기준 ■

- ▶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수당 등을 근로자가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7호(2012.1.1)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상시 지정제 운영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담당 (☎ 710-2511)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도민편의를 위하여, 일정기간 공모를 통해 지정하였던 것을 「상시 지정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2011년 :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공고기간 중에 접수를 받고 심사 후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4회 공고)
- 2012년 : 1월중 공고하여 연중 신청서 접수, 심사 후 지정여부 결정
-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을 통한 「상시 상담지원 시스템」을 구축, 사회적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의 상시 컨설팅 지원

###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준 ■

구 분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지정)	예비사회적기업(우리 도 인증)
지정 요건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⑥정관·규약을 갖출 것 ⑦(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①조직형태 ②유급 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으로서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현황 : 35개기업(사회적기업 12, 예비사회적기업 23)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자체 시책(2012.1.1)**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 담당 (☎ 710-2541)


 전년도에 비해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체를 고용심의위원회가 심사하고,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종업원분 소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종전의 지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이차보전, 시설투자금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인하, 인턴사원 지원 확대


○ 2012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 취득세 면제 : 고용우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기계장치
- 지방소득세 면제 : 종업원분
- 재산세 50% 감면 :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50% 감면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2012. 1. 1)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무시간 단축

제주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728-279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760-2617)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무시간이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되며,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시간당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 ○ 근로시간

- 만65세 미만 : 1일 8시간 이내이면서 주 30시간 이내 근무
  - \* 고용부 디딤돌사업 참여자의 임금 수준으로 조정
- 만65세 이상 : 1일 8시간 이내이면서 주 16시간 이내 근무
  - \* 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 수준으로 조정

### ○ 근로임금

- 인건비 : 1일(8시간 기준) 36,640원

### ■ 종 전 ■

- ▶ 근로시간
  - 만65세 미만 : 1일 8시간 이내이면서 주 40시간 이내 근무
  - 만65세 이상 : 1일 8시간 이내이면서 주 24시간 이내 근무
- ▶ 근로임금
  - 인건비 : 1일(8시간 기준) 35,000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2012. 1. 1)


## 멋, 맛, 즐거움이 있는 최남단 모슬포 토요일시장 개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통상진흥담당 (☎ 760-2811)

### **매주 토요일, 모슬포(대정)에서 토요일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 2011.10.29일부터 인근 가파·마라도 관광객 및 올레꾼 등 많은 방문객 등이 주로 찾는 모슬포 내항에 소규모 시장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 구수한 할망장터의 정겨움과 자연경관을 즐기며 느끼는 토속적인 향토의 맛은 삶의 여유로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 싱싱한 계절별 자연산 수산물(방어, 자리돔, 한치, 활어 등)과 농산물(마늘, 감자 등)등을 구매하거나 현장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 시장위치 : 대정읍 하모리 2124번지 일원(방어특화거리일원)
- 운영시간 : 매주 토요일 10:00~20:00
- 시장규모 : 50개 상가(임시상가 22, 기존상가 28)

 **개장일 : 2011. 10. 29**

## 장애인 중고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제주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 (☎ 728-2831)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상공에너지담당 (☎ 760-2631)

 2011.11.25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승용차는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되어 일반인도 LPG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간 LPG 중고차의 경우 판매가능한 대상이 제한됨으로써 동급의 휘발유 중고차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음.
- 사용기간 기준은 장애인 등(공동명의 포함)의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5년 경과된 경우로서, 차량명의를 여러번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합산되며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전후의 사용기간이 합산됩니다.
  - 단, 택시 또는 렌터카는 일반인 판매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등이 구입 후 자가용으로 등록하여 5년이 초과한 경우는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 ■ 종 전 ■


- LPG승용차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만이 소유 및 사용할 수 있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1. 11. 25)

##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 도입

제주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담당 (☎ 728-8408)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자동차등록담당 (☎ 760-3123)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 신고대상 : 배기량 50cc 미만(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 가능

○ 신고기간


- 신규 이륜자동차는 '12. 1. 1일 부터, 기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는 '12. 6.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자동차관리법(2012. 1. 1)**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일부사항 증명제도 시행

제주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728-2121)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담당 (☎ 760-2121)

 증명서 발급 시 이혼, 파양, 개명 등의 과거의 개인정보 사항 유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명서 내용 중 일부 사항을 제외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시행일시 : 2011. 12. 30

○ 증명서 발급시 제외되는 내용

증명서 종류	제외되는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본증명서	기아발견, 인지, 친권·후견종료, 실종선고 취소, 성·본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취소, 이혼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취소, 파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 취소, 친양자 파양

### ■ 종 전 ■

- ▶ 증명서마다 기록사항의 표시 필요성과 무관하게 과거의 기록 사항이나 말소사항까지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발급

 관련법규 및 시행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1.12.30)

##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생활환경담당 (☎ 710-6033)

### 2012.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문제점

##### ① 환경 훼손

- 에너지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
- 수거·처리 시 악취발생
- 고농도 폐수로 수질오염 등 처리 어려움

##### ② 경제적 낭비

- 식량자원가치('05기준) : 연간 약 18조원
- 처리비용('09기준) : 전국 8천억원 (제주 약 106억원)

#### ▶ 예를 들어, 4인 가족 한 끼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 온실가스 4.8kg CO<sub>2</sub>e\* 배출 (승용차 한 대 25km 운행시 배출량, 소나무 한 그루 1년 흡수량)

\* CO<sub>2</sub>e :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할 때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단위

- 에너지는 4.7kwh 소모 (냉장고 80시간, TV 22시간, 에어컨 5시간)

## 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제도 개선

국제자유도시본부 국제자유도시과 프로젝트1담당(☎ 710-3403)

### 관광진흥기금 용자지원 제도를 개선하게 됩니다.

-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의 경우,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시설(기획)업 운영자금 용자한도액을 3억원에서 5억원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여행업은 일반여행업에 국한하던 것을 국내·외여행업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일반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용자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2년 달라지는 세부사항


- ▶ 사업체 운영자금 한도액 상향
  -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시설(기획)업 : 3억 → 5억
  - 카지노업 : 전년도 외화획득액 30% → 50%
- ▶ 용자금 이월기준 완화로 사업자 편의도모 : 80% → 60%
- ▶ 외국인 관광객수용을 위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지원
  - 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호텔업)로 변경시 용자기간 연장 : (건설) 5년거치 5년분할상환, (개보수) 4년거치 4년분할상환
- ▶ 용자대상업종 확대
  - 여행업 : (당초)일반여행업 (추가)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 한옥체험업 추가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2012.1.1)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교육지원담당 (☎ 710-6237)

 **중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왔으나, 지원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규모 등이 더욱 확대됩니다.**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국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2번(1학기 - 6월 30일, 2학기 - 12월 31일 기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상자 중 저리 1·2종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이자 지원 규모 등도 확대됩니다.**

※ 2012년에 달라지는 사항

( )은 부담율임

구 분	이자율	2011년			2012년		
		정부	도	본인	정부	도	본인
저 리 1 종	4.90%	4.00%	0.90% (100%)	-	4.00%	0.90% (100%)	-
저 리 2 종	4.90%	1.50%	2.38% (70%)	1.02% (30%)	1.50%	3.40% (100%)	-
든든학자금	4.90%	-	-	4.90% (100%)	-	2.45% (50%)	2.45% (50%)


\* 이자율(4.9%)은 2011년도 기준이며, 2012년도에는 변동될 수 있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12. 12. 28)

## 365일 24시간 안전한 제주, CCTV통합관제센터 본격 운영


지식경제국 정보정책과 CCTV통합관제센터구축T/F팀 (☎ 710-2761)

 “제주특별자치도 CCTV통합관제센터” 가 오는 7월부터 365일 24시간 운영되어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대한민국 제1의 유비쿼터스 도시관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CCTV 전문 관제요원을 배치, 365일 24시간 물샐 틈 없는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각종 강력범죄 예방 및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도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도심·농어촌의 우범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고성능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각종 강력범죄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전 경찰순찰차와 소방차에 스마트시큐리티 단말기를 설치하여 범죄 및 긴급상황 발생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지령대, 119 상황실 등과 연계한 긴급출동체제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 ■ 종 전 ■

- ▶ 현재 도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업무별·용도별 특성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에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개인정보보호법 (2011. 9. 30)

# 대규모 전기사용자 전기사용 제한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전략경영팀 (☎ 740-3320)

## 🐼 절전규제 주요내용

- 제한대상 : 계약전력 1,000kW 이상 전기사용자
- 제한방법 : 피크시간 동안 총전력사용량이 기준사용량의 90% 초과 불가
  - 피크시간(평일) : 4시간(오전 10:00~12:00, 오후 17:00~19:00)
  - 기준사용량 : 전년 동월 피크시간(4시간)의 평균 사용량

## 🐼 적용예외 (5가지)

대 상	제 한 내 용
석유화학, 정유업종이면서 부하변동율* <sup>1</sup> 5%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축률 10% → 감축률 5%(경감)</li> <li>• 주간할당*<sup>2</sup>에의 참여의무 부여</li> </ul>
주간예고 의무이행* <sup>3</sup> 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축률 5% + 시행회수 50% 이상 이행의무</li> <li>• 불이행시 벌금(지원금의 2배) 부과</li> </ul>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면서 부하변동율 3% 이내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감축계획서 제출 → 지경부 승인</li> <li>→ 대국민 홍보 등 기업 사회적 책임 차원의 감축</li> </ul>
개별 의무이행 곤란 사용자 감축목표 이행 불가능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전기사용자와 공동으로 이행</li> <li>• 별도 신청, 심사</li> </ul>

\*<sup>1</sup> 부하변동율 : 평균전력 대비 부하변동치(최대전력과 최소전력 차이)

\*<sup>2</sup> 주간할당 : 1월 2~3주에 5일 이상 전년대비 20% 감축의무 부여

\*<sup>3</sup> 주간예고 의무이행 : 시행조건 발생시 시행회수의 50% 이상 의무이행

🐼 **관련법규 및 공고일** : 지식경제부 고시 2011-599호 / '11. 12. 5(월)

- 시행기간 : '11. 12. 15(목) ~ '12. 2. 29(수)

# 기본요금 산정기준 및 초과사용부가금 부과방법 변경

한국전력공사 전기상담 고객센터 (☎ 국번없이 123)

## 최대수요전력계 설치고객의 기본요금 산정기준 변경

- 종전 : 하계(7·8·9월분) 및 당월분 최대수요전력 기준
- 변경 : 동계(12·1·2월분), 하계(7·8·9월분) 및 당월분 최대수요전력 기준
  - ※ 대상 : 고압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과 교육용 저압고객 중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산정하는 고객


##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부과방법 변경

- 종전 : 전기사용량이 계약전력 × 450시간을 연간 2회 이상 초과할 경우 초과된 사용량에 대하여 초과사용부가금 부과
  - ※ 450시간 : 1일 15시간씩 30일 사용하였을 때 산정되는 시간
- 변경 : 전기사용량이 계약전력 × 45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사용량에 대하여 횟수에 비례하여 초과사용부가금이 차등 부과

- 2~3회 초과시 : 초과사용 전력량 × 전력량요금 단가의 150%
- 4~5회 초과시 : 초과사용 전력량 × 전력량요금 단가의 200%
- 6회 이상 초과 : 초과사용 전력량 × 전력량요금 단가의 250%
- ※ 720시간/월 초과사용의 경우는 현행과 동일(300%)


※ 대상 : 전력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계약전력 20kW 미만 및 계약전력 20kW 이상 고객 중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 고객

※ '11. 12. 31 이전 3년 이내에 450시간 초과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 초과사용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초과사용한 것으로 간주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전기공급약관 / 2012. 1. 1

##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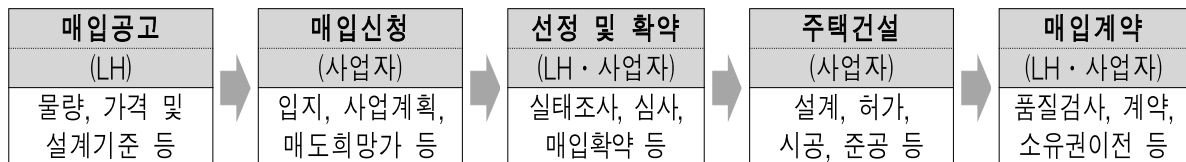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토목건축사업부 (☎ 720-1082)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도심내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신축예정인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합니다.


### ○ 사업개요

- 매입대상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신축(건축허가) 예정인 다세대·연립주택(30호 미만의 단지형 포함)중 LH의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으로써 호당 전용면적이 최소 46㎡~최대 60㎡ 이하인 주택
- 매입호수 : 연간 150호
- 매입가격 : 토지비 + 건축비 (사업비는 호당 1억2천만원 이하)
  - 토지비 :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
  - 건축비 : 주택공급면적×1,167천원/㎡('11년기준)  
\*발코니확장시 확장면적×69천원/㎡ 추가
- 신청자격 : 건축주(건축허가 전까지 토지소유권 확보)

### ○ 매입절차




※ 매입신청서, 설계기준, 건설계획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http://www.lh.or.kr))의 매입공고문을 참고 또는 LH 제주지역본부에 문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금자리주택업무지침(2011.9.30)

##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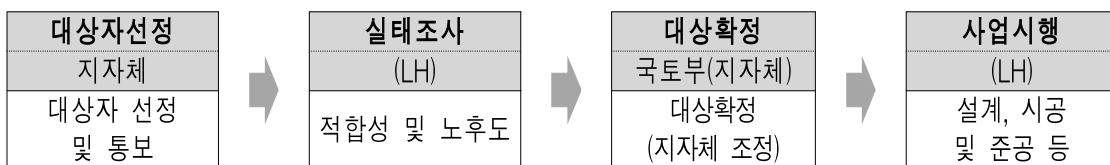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720-1051)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사회취약계층 소유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합니다.


### ○ 사업개요

- 대상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 시행호수 : 연간 약60호
- 공사내용 : 호당 기준금액(6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상주택 거주자의 요구사항을 최우선 공사항목으로 선정·시행
- 주요공사항목
  - 창호교체, 단열 및 새시 설치 등 에너지효율 개선공사
  - 지붕이나 외벽, 담장 등의 안전위험 부위 구조보강 공사
  - 단차제거, 램프설치, 좌식주방 등 무장애 시설공사
  - 누수, 배수불량, 도장, 대문보수 등 생활불편 개선공사

### ○ 시행절차




※ 대상자 선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 또는 LH 제주지역본부에 문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주택법 (2010년부터 시행)

## 2012년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 완화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 710-2816)

 2012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됩니다.

○ (중전)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족 기준 월 2,663천원) 이상이 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 (변경) 부양의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4인 가족 기준 월 3,790천원) 이하가 되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완화조치를 통해 도내 약 7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와 함께 2012년 최저생계비가 3.9% 인상되어(4인기준 1,439,413원 → 1,495,550원),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최저생계비 ■

-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2012.1.1)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용자제도 개선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 710-2816)

 저소득층의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도민에게 용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는 용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등 도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전세점포 자금(최대 2억원), 주택 전세자금(최대 3천만원) 등에 대하여 용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12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은


- 용자를 받은 도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용자금에 대한 이자율 연 2.5%를 연 1.0%로 인하하였고
- 용자대상이 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기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자활을 원하는 도민이 보다 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용자를 받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용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의 범위를 넓혀, 자활을 원하는 많은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2012. 2. 1)

##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주말 확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청소년담당 (☎ 710-2841)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청소년들의 주말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주말(토요일) 특별 프로그램을 추가 신설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특기적성교육, 심화학습, 숙제지도 등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게 됩니다.

- (중전)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주 5 ~ 6일(토요일 격주) 운영


### < 2012년도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시간 >

구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운영시간	15:00~21:00	09:00~16:00	미운영
	(1일 4~6시간)	(1일5시간탄력운영)	

### ※ 도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
- 소재 : 총 8개소(제주 4·서귀포 4)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제주YWCA, 한림 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대정 청소년수련관,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신산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자체 시책(2012. 1. 1)

## 100세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710-2821)

 **100세이상 노인 중 신청자에 대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월 27시간 이내로 제공하여(248,400원 - 본인부담금 18,000원 포함), 지역내 장수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 (중전) 가사·활동지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대상을

- 만65세이상 노인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11년 기준 - 1인가구 2,069천원)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A, B등급 대상자 중 선정

### 100세이상 노인 대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 대상자 선정·지원 : 100세이상 장수노인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지원 결정

#### ■ 지원 제외대상 ■


-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 입소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및 100세 이상 노인 보호·지원조례(2012. 1.1.)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710-2821)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노인들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금 지급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월별보험료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 하위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조례(2012. 1.1)

## 2012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710-2821)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원(노인 부부가구 6만4천원) 인상하여 78만원(노인 부부가구 124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2,752만원)인 분들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43만원으로 확대(전년대비 3만원 인상)됨에 따라
  -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원(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10만8천원)인 분들까지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시기 : 만65세 생일도래 2개월전(2012년 1947년생 해당)


#### <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선정기준액과 상세 기준 >

구분	선정 기준액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을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11년	74만원	월 최대 114만원 이하	월 74만원 이하	3억 560만원 이하
	'12년	78만원	월 최대 121만원 이하	월 78만원 이하	3억 1,520만원 이하
국민부부	'11년	118.4만원	월 최대 198.4만원 이하	월 118.4만원 이하	4억 1,216만원 이하
	'12년	124.8만원	월 최대 210.8만원 이하	월 124.8만원 이하	4억 2,752만원 이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기초노령연금법(2012. 1.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710-2834)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사회참여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행정도우미사업’의 사업량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과견사업’을 신규로 추가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년 460명 → ‘12년 708명)

- 장애인복지일자리 : 408명 → 650명


- 장애인행정도우미 : 52명 → 54명

- 시각장애인안마사과견(‘12 신규) : 4명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장애인복지법 (2012. 1. 1)**

##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710-2835)


 **도내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기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및 사회생활 지원을 추진합니다.**

- 『장애인 취업연수 프로그램』은 도내 대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현장에서 직접 업무 보조, 또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며 몸소 체험의 기회를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게 됩니다.
- 취업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주 40시간(주 20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수당 41,000원(20,500원)과 유급휴일수당이 주어지는 등, 청년 일자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자체 시책(2012년 하계 · 동계 방학시)**

## 정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 추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정책담당 (☎ 710-2821)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정부로부터 “2011 여성친화도시” 로 지정받아 안전과 편리, 소통과 참여, 관심과 배려 등 여성친화적 요소를 도정 정책 및 도시 공간 조성 등에 전면적으로 적용해 나가게 됩니다.

○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 이용시간 신축 운영, 육아휴게실·청소년 공부방·어르신사랑방 등이 공존하는 주민센터 운영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 무장애(Barrier Free) 보행로 조성, 방범 취약지역 대상 CCTV 및 가로등 설치, 초등학교 주변 보행 안전 확보, 공공도서관과 연계되는 근린 공원 운영 관리,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일상생활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배려와 소통을 통한 가치 추구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실현하게 됩니다.


※ 여성친화도시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여성발전기본법,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2012.1.1)

##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 (☎ 710-2883)

 현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 센터를 통하여,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주5일 수업제로 인하여 토요일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토요일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문화체험 및 현장체험 위주의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아동의 자립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종 전 ■


- ▶ 지역아동센터 주 5일 운영에 대한 기본 운영비 지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건복지부 토요일돌봄운영지원사업 지침 및 자체 시책(2012.1.1)

## 시설미이용양육수당을 장애아동에게 확대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 (☎ 710-288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장애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종전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가구의 시설미이용아동에게 지원하던 것을 만5세이하 장애아동에게 확대하게 되며,
  - 지원금액은 36개월미만 월 20만원, 36개월부터 취학전 만5세이하 월1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장애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기대하는 한편 장애아동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종 전 ■


-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원 지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2012.1.1)

## 요보호 아동 보호 지원 강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아동보육담당 (☎ 710-2881)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비를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며,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문화활동비 (월 15천원~25천원)를 신규 지원합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1식당 단가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고,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토요 돌봄 운영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일수를 255일에서 312일로 확대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종 전 ■

-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월 10만원
-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 월 8만원
- ▶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비 지원 : 월 8만원
- ▶ 아동급식 지원 : 1식당 단가 3천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255일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자체 시책 (2012.1.1)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지정·운영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담당 (☎ 710-2886)

 제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다문화가족 지원 거점센터』를 지정, 운영합니다.


○ 지금까지 전국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거점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광역지자체별 각 1개소씩 거점센터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제주지역 거점센터를 별도 지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거점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다문화가족 사업 지원, 종사자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 지역센터(2개소) 종사자 및 지도사에 대한 효율적 교육 시행, 상담 서비스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종전 지역센터(제주시·서귀포시) 중 제주시지역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 시설 등 보강 운영

### ■ 종 전 ■

- ▶ 제주·부산·울산을 1개 권역으로 묶어 울산에 거점센터 운영

 관련규정 및 시행일 : 다문화가족지원 지침(2012. 1. 1)

## 응급심야약국 시범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의료산업담당 (☎ 710-2922)

 **도민의 건강권 확보 및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심야약국을 운영합니다.**

- 종전 도민과 관광객들이 심야 시간대 운영 약국이 없어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있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심야약국 6개소(제주시 3, 서귀포시 1, 읍면 동·서부 2)
  - 읍·면·동별 지역별 심야약국을 지정하여 24:00까지 운영
- 향후 2012년도 심야약국 시범 운영에 따른 이용 실태 등을 분석하여 확대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종 전 ■

-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이 없음

 **관련규정 및 시행일 : 자체 시책(2012. 1. 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건강관리담당 (☎ 710-2931)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번씩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건강취약계층을 배려한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에게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정책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지원조건 :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하게 일반검진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의료수급권자 만 19세부터 만 64세까지

· 만 19세~만 39세 세대주


· 만 40세~만 64세 전체

-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 실시(2년 주기)

※ 65세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


### ■ 종 전 ■

▶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2년에 한번씩 일반건강검진

 **관련법규 및 시행일: 의료급여법 (2012. 1. 1)**

##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건강관리담당 (☎ 710-2931)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출생아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등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 2012년 전 출생아 가정
- 지원금액 :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120만원

### ■ 종 전 ■

- ▶ 출산장려금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이상 100만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2012. 1. 1)

## 저소득층 의치보철사업 확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건강관리담당 (☎ 710-2931)

 저소득층 의치보철 지원이 만20세 이상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 노인 중심의 의치보철사업을 저소득층 만20세 이상부터 확대 실시하여 치아 결손자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012. 1.1 ~ 12.31


-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 지원단가 : 1악당 전부의치 750천원, 부분의치 1,190천원

※ 1인당 2악까지 지원 가능


### ■ 종 전 ■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지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자체 시책(2012. 1. 1)

## 12세이하 아동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실시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질병담당 (☎ 710-2936)

 예방접종의 편리와 육아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보건소 뿐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 필수 예방접종 (8종)

- 종류 : 결핵,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Td
- 사업대상 : 만12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 예방접종 기관 : 84개소 ( 보건기관 17, 병의원 67 )

### ○ 보건복지부 및 우리도의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 : 접종비 15,000원 중 10,000원 지원(국비50%, 도비50%)  
5,000원 본인부담
- 우리 도 : 본인부담 5,000원 추가 지원하여 전면 무료예방접종

### ■ 종 전 ■


- ▶ 보건복지부 : 약품비 지원 (국비50%, 도비 50%)
- ▶ 우리 도 : 예방접종 종류별 단계적으로 예방접종비 지원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 1.)

## 취학아동 입학 시 예방접종 확인 증명서 제출 불필요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질병담당 (☎ 710-2936)

 입학 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행정시스템과의 전산연계 구축으로 학교에서 입학대상자의 예방접종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 상 자 : '12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아동

· 확인대상 예방접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4차

### ■ 종 전 ■

▶ 취학아동 입학 시 학부모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 증명서 발급 : 보건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1.1)

## 한부모가족에게 중고생학용품비·생계비·추가양육비 지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 728-258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문화사회지원팀 (☎ 760-6431)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중고생 학용품비, 생계비, 추가양육비를 신규 지원하게 됩니다.


### ○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규 사업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가구	가구당 월 5만원
	추가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에서 추가양육비를 지원하므로 제외	5세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모든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100% 이하는 국가기초생활보장비수급자)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함.



### ■ 종 전 ■

- ▶ 아동교육비(자녀1인당 월5만원), 자녀교육비(입학금, 수업료)에 대해서만 지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한부모가족지원법 (2012. 1. 1)

## 0~2세, 5세 무상보육 및 『5세 누리과정』 공통보육 실시

제주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 728-258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 760-2472)

-  0세~만2세, 만5세 보육료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되어 부모 양육 부담이 경감됩니다.
-  만5세아에 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보육과정 실시로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 규 사 업	만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이용 만5세아에 대하여 유치원과의 공통보육과정 시행 및 보육료 100% 지원	만5세아 정부지원단가 200천 원/월
확대 지원 사업	0~만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0세부터 만2세까지의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100% 지원	0세아 394천원/월, 1세아 347천원/월, 2세아 286천원/월

- 그간 만5세아에 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차이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 0~만2세아, 만5세아 보육료 100% 지원으로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종 전 ■

-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 소득인정액 : 416만원/3인, 480만원/4인, 537만원/5인, 588만원/6인

 관련법규 및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2012. 3. 1)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 728-259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보육담당 (☎ 760-2451)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읍면어린이집 교직원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 ○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규 사업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교사	1인당 월 5만원
	읍면어린이집 교직원 교통비	읍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1인당 월 5만원

○ 보육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종 전 ■

- ▶ 보육교직원 능력향상비
  - 도시지역보육교사 135천원/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80천원/월,  
기타종사자 100천원/월
- ▶ 농어촌특별근무수당 : 110천원/월

 관련법규 및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2012. 3. 1)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조손가정 초·중·고등학생에게 용돈 지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동담당 (☎ 728-268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담당 (☎ 760-6446)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조손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용돈을 신규 지원하게 됩니다.

### ○ 지원내용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규사업	아동 용돈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조손가정 초·중·고등학생	초 월 15천원/인 중 월 20천원/인 고 월 25천원/인


### ■ 종 전 ■

- ▶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 월동대책비, 자립지원금, 상해보험료만 지원
- ▶ 조손가정에는 조손가정수당만 지원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자체 시책(2012. 1. 1)

## 조손가족에 대한 교육문화정서 등 통합 지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가족지원담당 (☎ 760-2471)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구에 대하여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건강악화, 아동의 학습부진과 정서적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손가족 통합지원 사업' 을 추진합니다.


○ 손자녀의 학습능력 향상 및 정서적 상실감 치료, 건강이 악화된 조부모를 위한 가사지원, 심리검사·미술치료, 문화 체험,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조손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손자녀(고등학생 이하)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조손가정

⇒ 최저생계비 130%이하 및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

- 사업 내용


- 아동 학습지원 및 정서적 상실감 치료를 위한 학습도우미 파견
- 조부모의 건강악화 시 손자녀 돌봄·가사지원을 위한 생활도우미 파견
- 가족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캠프·문화체험 등의 가족문화 지원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노후 주거환경개선 등

 관련법규 및 시행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2012. 4. 1)

\*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서귀포시 지역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중

##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710-6881)

 **도민의 세부담 완화 및 세제차별화를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비영업용 자동차의 취득세율이 축소 조정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현행 7%에서 5%로 축소 조정되어 2% 세율인하에 따른 도민 혜택이 있으며,

- 2,000만원 자동차 절감효과 :  $2,000\text{만원} \times (7-5)\% = 40\text{만원}$

○ 비영업용 승합·화물 자동차는 현행 5%에서 4%로 축소 조정되어 1% 세율인하에 따른 도민 혜택이 제공됩니다.


- 3,000만원 자동차 절감효과 :  $3,000\text{만원} \times (5-4)\% = 30\text{만원}$

※ 연간 도민 혜택은 62억원에 해당되고, 시설대여업 유치를 통하여 연간 750억원의 세수 확충이 전망됩니다.

### ■ 종 전 ■

▸ 다른 자치단체와 같은 자동차 취득세율 적용


- 비영업용 자동차 : 승용 7%, 승합·화물 5% 등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2012. 1. 1)

##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기업 지역별 차등 조세지원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710-6881)

 이전기업의 서귀포시 유치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재산세 감면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도외 기업의 제주시 이전은 재산세 면제기간을 5~7년으로 하고,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전은 5년, 그 외 지역은 7년
- 도외 기업의 서귀포시 이전은 재산세 면제기간을 7~10년으로 하였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전은 7년, 그 외 지역은 10년
- ※ 도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서귀포시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 종 전 ■

- ▶ 이전기업에 대해 지역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
  - 재산세 감면 : 5년 동안 면제, 이후 3년 동안 50% 경감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2. 1. 1)

## 수출기업·신성장 제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710-6881)

 수출기업 및 신성장 제조업 육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자생적 발전 동력을 확충하고자 세제지원을 신설 또는 확대하였습니다.

○ 연 100만불 이상의 수출기업 또는 신성장 제조업\*의 신규투자에 대하여는,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
- 2012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

\* 신성장 제조업 : 수상레저기구(부품 포함), 신·재생에너지 설비(부품 포함), 레저 스포츠 용품(경량항공기, 활공기, 골프, 등산, 낚시 및 승마에 한정) 제조 기업

○ 연 30만불 이상 수출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에 대하여는,


- 부동산 및 기계장비 취득세 면제, 부동산 5년간 50% 경감

○ 수출기업 또는 신성장 제조업의 도내 이전에 대하여는,

-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2012년 이후 취득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10~15년 면제 (제주시 이전은 10년, 서귀포시 이전은 15년 차등 지원)


### ■ 종 전 ■

- ▶ 수출기업 또는 신성장 제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없었으며, 이전에 대하여는 일반기업과 차별 없이 지원
  -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 + 이후 3년 50% 경감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2. 1. 1)

##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710-6881)

 해운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발전 동력을 키우고 물류비 저감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세제지원을 신설 또는 확대하였습니다.

○ 해양화물 운송사업용 선박에 대하여는,


- (현행) 취득세율 1% 차감 → (개선) 취득세율 2% 차감
- (현행) 재산세 외항운송 50% 경감 → (개선) 75% 경감

○ 해양여객 운송사업용 선박에 대하여는,

- (현행) 취득세율 1% 차감 → (개선) 취득세율 2% 차감
- (현행) 재산세 50% 경감(내항 제외)  
→ (개선) 내항 50%, 외항 75%, 순항 100% 경감


○ 해양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 부동산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
- 2012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년 50% 경감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2. 1. 1)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710-6881)

 **관광산업 육성과 제주로의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 또는 연장하였습니다.**

○ 국제노선 항공기\*에 대하여,

- (현행) 재산세 50% 경감 → (개선) 재산세 100% 면제


\* 국제노선 항공기 : 주 3회 이상 국제 운항을 조건으로 재산세 지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하여는,

- (현행) 부동산 취득세 면제 → 일몰기한 3년 연장

### ■ 종 전 ■

- ▶ 국제노선 항공기에 대한 세제지원은 신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몰기한 연장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2. 1. 1)**


## FTA 대응,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710-6881)

 FTA에 대응한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 축사,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가축운송차량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을 위하여,
  - 산지유통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 FTA에 대응, 친환경농업 지원 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면은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신설된 조항들입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2. 1. 1)

## 공향소음 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세제 지원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710-6881)


 공향소음 대책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 공향소음 대책지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 취득세(승계취득에 한함) 및 재산세를 50% 경감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2. 1. 1)

## “새터민” 자활을 위한 세제 지원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710-6881)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및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 1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2. 1. 1)

## 다자녀가정·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710-6881)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자동차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자녀가정의 1주택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 다문화가족의 자동차(1대)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2. 1. 1)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감면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실 세정담당 (☎ 710-6881)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의 세 부담 급등에 따른 불합리를 해소하고, 세 부담 완화를 통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 특례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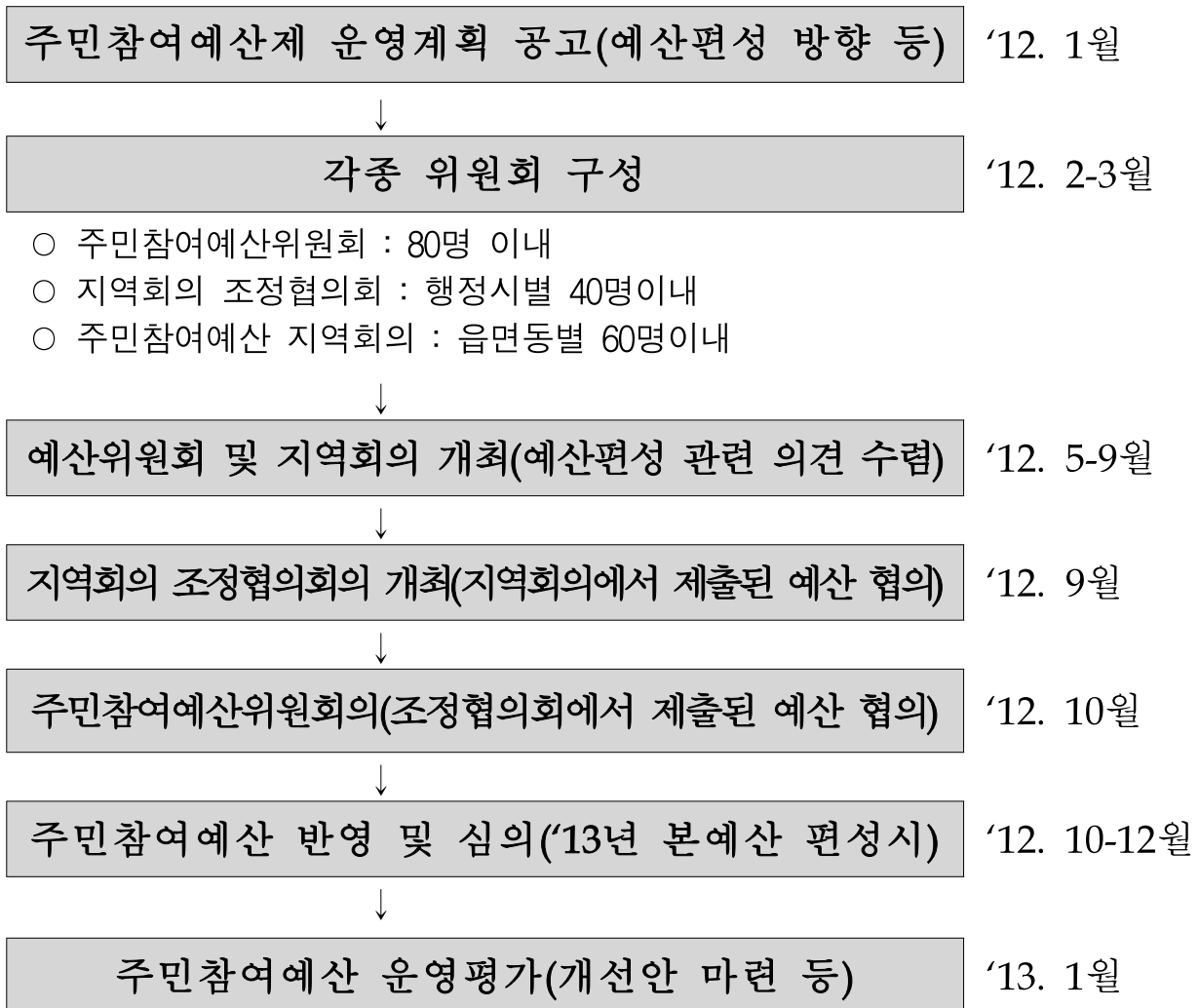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 조성 토지의 공급 완료 또는 공사완료 공고 시까지
  - 해당 토지의 과표를 50% 공제한 후 0.2%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2012. 1. 1)

## 『주민참여 예산제』 본격 시행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담당 (☎ 710-2321)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본예산 편성과정(2012. 11월 확정)에 주민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1.8.17)

## 농업생산비 감축을 위한 농자재 세제 지원 확대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 710-3161)

 농업용 면세유류,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지원 기간 및 대상이 확대되어 농업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게 됩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연장하고, 공급대상 기종을 추가하여 직접적으로 농가 영농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간 연장 : 2015. 12. 31까지

- 대상 기종 추가 : 농용굴삭기(1톤 미만), 사료배합기

○ 농기계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가 추가되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 영세율 일몰기간 연장 : 2014. 12. 31까지

- 적용대상 확대 :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 5종(영세율)


농산물 수확용 상자, 화훼재배용 화분 등 3종(부가세 환급)

### ■ 종 전 ■

▶ 면세유 공급 기간/대상 : 2012. 6.30/동력경운기 등 39종


▶ 영세율 적용 기간/대상 : 2011.12.31/동력경운기 등 32종

▶ 부가세 환급 : 농업용 필름 등 32품목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중(개정안 발표 2011. 9. 7)

## 신규 농약 판매업 관리인 교육 과정 폐지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담당 (☎ 710-3161)

 농약판매업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농약판매업 등록신청시 등록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농약판매업 등록 신청시 판매관리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 농약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절차가 폐지되어 농약판매업 등록 신청이 편리해졌습니다.


○ 농약판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술사 등의 자격
- 농약판매업에 3년 이상 농약관련 업무 종사자 등으로

단체장 추천 또는 인사기록카드에 업무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 종 전 ■

- ▶ 판매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평가결과가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게 농약판매업 관리인 자격 부여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약관리법(2012. 1.26)

##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신규 도입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담당 (☎ 710-3216)

 **음식점에서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 제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 음식점에서 생식용, 조리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되는 **광어, 우럭 등 6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 6개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님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은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태평양 등),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2. 4. 11)

## 선박위치발신장치 전 어선 설치 확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담당 (☎ 710-3216)


 어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입출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모든 어선에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운항하게 됩니다.

- 그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은 배의 길이 45m(300톤급) 이상 어선과 총 톤수 2톤 이상의 낚시어선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한정하였으나,
  -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전 어선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어선법 개정(2011. 7.14).
- 향후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수색활동으로 어업인 인명 및 재산보호는 물론 어선 출·입항 신고 자동화에 따라 어업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어선법(2012. 7. 15)

## 낙시어선 및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제도개선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어선어업담당 (☎ 710-321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일부개정( '11.5.23)으로 「낙시어선업법」의 일부 사무가 이양되어,

- 지역실정에 맞게 낙시어선의 규모와 선령을 확대하는 한편, 연안어업의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 등을 확대하게 됩니다.

○ 낙시어선의 규모인 경우 현행 10톤 미만 연안어선에서 15톤 미만 근해어선도 낙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낙시어선의 선령은 안전성이 확보된 합성수지선에 한하여 현행 25년 이하를 27년이하로 2년을 연장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 연안들망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의 척수는 현행 2척에서 3척 이내로


- 부속선의 규모는 현행 무동력선 또는 10톤미만의 동력선을 가공 및 운반 겸용선인 경우에는 여러 척이 선단 조업시는 100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염장용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멸치를 선상에서 건 멸치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 낙시어선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2012. 1월 중)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체계 변화

농축산식품국 축정과 동물방역담당 (☎ 710-2151)

 전업농가(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사육)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50%를 부담하고 자가접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농가에는 현행과 같이 행정에서 백신을 구입하여 무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 전업농가에서는 지역 축협(동물병원)을 통하여 백신구입비 50% (두당 900원 예상)를 지급하고 백신을 직접 구입하여 소유 가축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 나머지 50%는 국가 및 우리도에서 지원합니다(행정시 → 축협)

※ 구제역 4차 일제 예방접종(2012.2월 예정) 예방약에 한해서는 무료로 공급

○ 특히 2012년부터는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가 강화되며, 미 접종 확인시에는 과태료(500만원이하)가 처분됩니다.

### ■ 종 전 ■


▶ 구제역 예방백신은 국가에서 일괄 구매 후 무료로 공급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수산식품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2012. 1. 1)

###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 예방지도담당 (☎ 710-3541)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인명피해(주택화재 사망자 중 단독주택 거주자가 50.2%)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고, 주택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 범위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완강기

○ 적용시점 : 2012. 2. 5 이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증축·개축·재축 이전·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종 전 ■


-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해당 없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2. 2. 5)

## 노유자시설(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 강화


소방방재본부 소방정책과 예방지도담당 (☎ 710-3541)

 경북 포항의 인덕요양원 화재사고 이후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 등이 강화(추가)되어, 기존 생활시설에 한하여 2014. 2. 4 까지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 확대
  - 노유자 시설로서 200㎡ 이상인 건축물
  - 노유자 생활시설로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등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확대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연면적 300㎡ ~600㎡ 미만(창살 설치시 연면적 300㎡ 미만)
    - 노유자 생활시설(면적에 관계없이)
  - 자동화재탐지 설비
    - 연면적 400㎡ 이상, 노유자 생활시설(면적에 관계없이)
  - 자동화재속보 설비
    - 바닥면적 500㎡ 이상, 노유자 생활시설(면적에 관계없이)

### ■ 증 전 ■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 범위
  - 노유자 시설로서 200㎡ 이상인 건축물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2. 2. 5)

## 행정시 자치경찰대가 도소속 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 710-6311)

 **현행 자치경찰은 소규모인데도 도소속 자치경찰단과 행정시 소속의 자치경찰대로 분리 편제되어, 인력·기능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과 이중적 지휘로 인한 업무혼선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된 결과, 통합 자치경찰단 조직으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 통합 자치경찰단은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신속한 업무처리로 **도민중심·현장중심형 치안서비스**를 수행하는 한편,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WCC 개최에 따른 청정제주 환경보호활동 및 자치경찰기마대 창설운영 등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 **국제자유도시 제주만의 특색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 종 전 ■

제주특별자치도 : 자치경찰단, 제주시 : 자치경찰대, 서귀포시 : 자치경찰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2012년)**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실시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31)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확인신체검사 대상은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와,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등입니다.
-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병역면탈행위가 확정되면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되거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종 전 ■

- ▶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병역법(2011.11.25)

##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 연장(1년→2년)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31)

 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대상자(신체등위 7급)로 판정 받은 사람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치료에 도움을 주고, 내과·정신과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충분한 병력 확인 기간 확보를 위해 7급 경과관찰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 현재 7급 재신체검사의 경과관찰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장기간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입영과 귀가를 반복함에 따른 민원불편이 해소되고
- 충분한 병력확인 기간 확보로 정확한 병역처분과 고의적 치료 방치 등에 의한 병역면탈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제도는 2012.1.1.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 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 종 전 ■

- ▶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법규 및 시행일: 병역법(2012.1.1)

##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34)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거나 신체가 건강함에도 병역이 면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이 제도는 과거 병역자원이 풍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감면하고자 도입되었으나, 2004년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었고, 중학교 중퇴이하 사유 병역면제 후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진학 및 프로 운동선수 활동, 조기유학·외국인 학교·대안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외의 방법으로 학업을 이수하는 등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2012.1.1부터는 중학교 중퇴이하 학력자('93.1.1이후 출생자)라도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 다만, 가정환경이 불우한 사람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적용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의무부과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 종 전 ■

-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

 관련법규 및 시행일: 병역법 시행령(2012.1.1)

##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폐지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31)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 그동안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형사유로 병역이 감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2011.11.25. 이후 병역면탈 행위를 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 종 전 ■

▶ 죄명 구분 없이 수형자 형량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

 관련법규 및 시행일: 병역법 시행령 (2011.11.25)

## 『재징병검사』 제도 시행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31)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새롭게 처분된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됩니다.

- 징병검사를 받고 학업 등으로 장기간 입영을 연기할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 신체등위 판정기준도 의료 및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변경되고 있음에도 수년 전의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 병역처분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 입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 종 전 ■

- ▶ 징병검사 이후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기존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이행하거나, 본인 희망 시 신청에 의해 재신체검사 실시

 관련법규 및 시행일: 병역법 (2012.1.1)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41)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력 간 불공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도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이하자와 각급학교의 졸업 예정자에게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대학재학생 등 연기 중인 사람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졸이하자의 경우 입영일자 선택기회가 없어 학력 간 불공정 소지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학력 간 차별해소와 병역이행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현역입영대상자 모두가 스스로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종 전 ■

- ▶ 대학재학 사유 입영연기자 위주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 운영

 관련법규 및 시행일: 현역병입영업무규정(2012.1.1)

## 현역병 모집분야 추가(3개 분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59)

 육군 ‘연고지복무병’ 등 다양한 모집분야를 신설하여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조기적용 및 병역이행의 자율선택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육군 ‘연고지복무병’은 강릉시 등 21개 시·군에 가족과 함께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2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선착순으로 선발합니다.


- 복무부대 : 1·3군 예하 40개 사·여단
- 모집시기 : 2012년 3월부터 모집(5월부터 입영)
- 계획인원 : 연간 3,000명

○ 육군 ‘특공·수색병’은 특공여단, 특수부대 등 특수임무부대에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서류전형, 체력평가를 거쳐 선발합니다.

- 모집시기 : 2012년 3월부터 모집(5월부터 입영)
- 계획인원 : 연간 약 900명


○ 해군 ‘동반입대병’은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입영하여 전역 시까지 함께 군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하며, 동반 지원자 2인의 중·고교성적 또는 대입 수능성적, 출결사항, 면접점수 등을 종합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 모집시기 : 2012년 1월부터 모집(3월부터 입영)
- 계획인원 : 연간 120명
- 복무분야 : 일반계열(갑관병종)

 관련법규 및 시행일: 육군/해군 현역병모집업무규정(2012.1.1)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연령 상향 조정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43)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가능 연령을 당초 29세에서 사법연수원생과 같이 30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가능 연령이 29세로 사법연수원생의 30세와 달라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 가능 연령을 사법연수원생과 같이 30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11.11.25.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 ■ 증 전 ■

- ▶ 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29세까지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관련법규 및 시행일: 병역법 시행령(2011.11.25)

##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기준 마련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52)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하여는 퇴영하지 아니하고 치료 후 잔여 교육만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이 교육소집 중 부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온(퇴영) 후, 군부대에 다시 입영하여 4주간의 군사교육을 처음부터 새로 받도록 하고 있어 병역이행이 지연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에, 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공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에 차기 교육일정에 편성되어 남은 교육소집을 마치고 바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빨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종 전 ■

- ▶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하여는 퇴영 후 재교육 소집 실시

 **관련법규 및 시행일: 병역법 시행령(2011.11.25)**

## 승선근무예비역 이동 근무제도 개선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54)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 범위를 개선하고,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이동근무가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는 등 이동근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는 '편입된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만 허용함으로써 이동근무가 실질적으로 제한되었으나,
  - 이를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로 개선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선박관리업체 변경, 선박관리업체에 위탁사유로 승선근무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선박이 없는 경우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이동근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역이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 종 전 ■

- ▶ 편입된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이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이동근무
- ▶ 배정인원과 관계 없이 이동근무가 가능한 경우
  - 업체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감선 등의 사유로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관련법규 및 시행일: 병역법 시행령(2011.11.25)

## 부모와 같이 국외 장기거주자 국외여행허가 개선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 720-3253)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4세까지 계속 국외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영주권 등 체재목적은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 처리 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1.11.25.부터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24세까지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외이주자에 대하여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해도, 종전과 같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 불필요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발생을 방지하여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안정적인 해외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종 전 ■

▸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

 관련법규 및 시행일: 병역법 시행령(2011.11.25)